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
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992. 10. 17.
운 영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16일
임병섭의원의6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10월 16일
-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10월 16일
(제13회 임시회(휴회중) 제3차 운영위원
회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林炳燮의원)

가. 提案理由

○지방자치법 시행령(1992. 9. 17. 대
통령령 제 13727호)으로 지방의회 의
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개정공포에
따른 우리의회 관련 조례개정

나. 主要骨子

-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여
행지 구분 축소 조정
3구분(특지, 감지, 을지)→2구분 (감
지, 을지)
- 국내여비 정액을 10%상당 인상

의장·부의장

현지교통비	[감지	4,500 → 5,000
(1인당)		을지	4,000 → 4,500
숙박비	[감지	15,000 → 17,000
(1야당)		을지	13,500 → 15,000
식비	[감지	10,000 → 11,000
(1일당)		을지	9,000 → 9,500

의 원

현지교통비	[감지	4,000 → 4,500
(1인당)		을지	3,500 → 4,000
숙박비	[감지	11,500 → 14,000
(1야당)		을지	10,500 → 11,500
식비	[감지	9,500 → 10,500
(1일당)		을지	8,500 → 9,000

3. 檢討意見 : (전문위원 : 俞載漢)

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이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공포되어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
(대통령령 제13727호(1992. 9.17))하여 여비지
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현행 3구분(특지, 감지, 을지)중 특지를 없애고
2구분(감지, 을지)으로 축소조정하고 국내여
비정액을 10% 인상하여 국내에서의 의원의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데 있다고 사료
되며, 또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1항과
관련) 비교중 4를 신설하여 의회 소재지(동
일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함) 12km미만의 여행 및 출석은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로 숙박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審查結果 : 만장일치 원안 가결함.

(재적위원 9명

- 출석 8명
- 찬성 8명
- 반대 없음)

5. 別添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일비
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 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19

발의년월일: 1992. 10. 16.
발 의 자: 임병섭의원외6인

1. 改正理由

19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의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국내여비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여행지구분 축소 조정
3구분(특지, 갑지, 을지) → 2구분(갑지, 을지)
- 국내여비 정액을 10%상당 인상

의장·부의장

현지교통비 (1인당)	[갑지	4,500 → 5,000
		을지	4,000 → 4,500
숙박비 (1야당)	[갑지	15,000 → 17,000
		을지	13,500 → 15,000
식비 (1일당)	[갑지	10,000 → 11,000
		을지	9,000 → 9,500

의원

현지교통비 (1인당)	[갑지	4,000 → 4,500
		을지	3,500 → 4,000
숙박비 (1야당)	[갑지	11,500 → 14,000
		을지	10,500 → 11,500
식비 (1일당)	[갑지	9,500 → 10,500
		을지	8,500 → 9,000

3. 關聯根據

-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4. 豫算措置

별도 조치 필요없음(기확보된 예산으로 집행 가능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
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감지 5,000	감지 17,000	감지 11,000	800
부의장		정액			을지 4,500	을지 15,000	을지 9,5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감지 4,500	감지 14,000	감지 10,500	800
		정액			을지 4,000	을지 11,500	을지 9,000	

비 고

1. “감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감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감지 5,000 을지 4,500	감지 17,000 을지 15,000	감지 11,000 을지 9,500	800
의원	2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감지 4,500 을지 4,000	감지 14,000 을지 11,500	감지 10,500 을지 9,000	800

비 고 : 1.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감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일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4.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